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- 230호

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6월 23일

중소기업청장

##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### 1. 개정 이유

‘성실수행’ 인정 등 연구개발 제도전 기회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내용 반영 및 기술임치 의무화를 완화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최종평가 기준 정비(제25조 ③항)

- R&D사업에 ‘성실수행’을 인정함에 따라, 기술개발과정의 성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‘성실수행’ 및 ‘실패’ 기준의 명확화

#### 나. 기술임치 의무화 개선(제28조 ⑧항)

- R&D 수행기업이 그 과제에 대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등록한 경우 기술임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

다. 기타 (안 부칙 제1~3조)

- “성실수행”으로 판정된 과제의 제30조(제재 등) 및 제31조(출연금 관리 및 환수)의 적용 조항 신설
-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」(대통령훈령제248호)에 따라 3년 이내에서 재검토기한 설정

3. 의견제출

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(기술협력보호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\* 보내실 곳 :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 
기술협력보호과(전화 : 042-481-4400, Fax : 042-472-3289)

## 중소기업기술개발 운용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5조(최종평가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최종 보고서, 연구노트,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“성공”, “성실수행”, “실패”, “보류”로 구분하며, 판단기준 아래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성실수행 :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, 기술개발목표를 약간 미달성하였거나, 사업화 가능성이 약간 낮은 경우</u></p> <p>3. <u>실패 : 계획된 최종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,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, 사업비 관리 및 집행 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·시정조치 불이행의 경우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 <p>제28조(결과의 활용) ①~⑦ (생략)</p> <p>⑧ <u>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<u>임치하고</u>, 전문기관의 장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수처인에게 임치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</u></p>	<p>제25조(최종평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성실수행 : 기술개발 목표를 미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</u></p> <p>3. ----- <u>기술개발 목표를 미달성하고 기술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-----</u>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8조(결과의 활용) ①~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----- ----- ----- <u>임치하여야 하고</u>,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단, 기술자료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경우,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.</u></p>

부 칙	부 칙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신설</u></p>	<p>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4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.</p>
	<p>제2조(경과조치)“성실수행”으로 완성된 과제의 제30조(제재 등) 및 제31조(출연금 관리 및 환수)의 적용은 동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</p>
	<p>제3조(재검토 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

< 소관 부서명 >

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400